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17.(목)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 3. 제안이유

- 한국어는 그 우수성과 과학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외국어·줄임말·비속어 등의 사용으로 국어의 가치가 훼손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 공문서 등의 작성·평가(안 제5조)
- 정책 등의 명칭(안 제6조)

- 국어책임관 지정(안 제7조), 실태조사(안 제8조)
- 국어 바로쓰기 교육(안 제9조), 국어문화 조성(안 제10조)
- 지원(안 제11조)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이유

- 빠른 사회변화와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 확대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소통이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줄임말, 신조어, 비속어, 부정확한 외국어 등의 남용으로 한글 체계와 가치가 훼손되고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장애와 단절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로<sup>1)</sup> 부각되고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사용 실태조사 결과<sup>2)</sup> 습관적으로 줄임말, 신조어 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문서나 보고서, 정책 및 추진 사업 자료 등에서 무분별한 외래어 등의 사용이 도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sup>3)</sup>되고 있음.

1) 교육현장 학생들 언어 실태 ...‘잼민이’, ‘문쩨’등 비속어, 욕설 난무(대전일보. 2021. 10. 7.)

2) 스마트 학생복,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설문조사 진행(제민일보. 2021. 10. 21)

3) ▪ 국립국어원이 2014년부터 5년동안 중앙행정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한글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564건 중 10,310건(50.1%)의 보도자료가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14~2018년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

연도	총 점검한 보도자료 건수	문제 있는 보도자료 건수	전체 지적 표현 건수
2014	4,000	1,550	4,132
2015	4,203	2,621	8,171
2016	4,232	2,668	9,271
2017	3,994	1,684	6,207
2018	4,135	1,787	5,908
합계	20,564	10,310	33,68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청 공공언어 쉽고 바른 우리말 촉구...‘외래어 남발’(뉴스1. 2021. 10. 8.)
- 경기도 공문서 등 공공언어 46% ‘순화’ 필요(프레시안. 2021. 10. 6.)

- 이에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충청북도 내 학교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 차원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어 바로 쓰기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입법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타당한 내용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일반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 향상과 올바른 국어 보급 및 국어순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 생각함.
- 다만 평가는 지표를 가지고 등급·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점검과 구별되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과 같은 평가방식 및 평가주체,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 국어책임관의 지정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국어 바로쓰기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타당한 사항이나, 국어책임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 국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국어기본법」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타당하나, 국어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그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 바로쓰기 연수 및 교육과 다양한 행사를 통한 국어문화 조성 노력을 규정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올바른 국어 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 실천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써 적극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그 실효성이 인정되고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됨.